

친환경제품 구매 규정

2023. 05. 02. 제정
2025. 11. 17. 개정

제 1 조 (목적)

이 규정은 OCI 주식회사(이하 “회사”)가 회사의 친환경 경영 목표를 달성하고 환경적,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친환경제품의 구매를 촉진하고 이와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적용범위 및 대상)

이 규정의 적용범위는 아래와 같다.

- ① 이 규정에 따른 친환경제품의 구매는 회사의 본사 및 전 사업장에서 업무 및 제조활동에 소요되는 원부자재, 상품, 용역(서비스) 및 공사계약을 통해 구매하고자 하는 품목에 친환경제품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 ② 이 규정은 필요한 경우 회사뿐 아니라 회사의 공급업체, 용역계약업체, 공사 수급업체 등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 3 조 (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쓰이는 용어의 정의는 아래와 같다.

- ① “친환경제품”이란 제품의 원료 조달부터 생산, 유통, 사용 및 폐기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줄이고 자원·에너지 효율성을 높인 제품을 말하며, 친환경제품의 범위는 아래와 같이 정의한다.
 1.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7조 제1항에 따른 환경표지의 인증을 위한 대상 제품으로서 인증을 받은 상품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대상 제품별 인증기준에 적합한 상품
 2.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8조 제1항에 따른 환경성적표지의 인증을 받은 제품 중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온실가스의 배출량을 줄인 제품
 3.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33조 및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5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재활용제품의

품질인증 대상품목으로서 인증을 받은 상품 또는 인증기준에 적합한 상품

4.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관계 부처 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대상품목별 판단기준에 적합한 상품 및 정부·지자체·국제기구(ISO 등) 공신력 있는 제3기관의 친환경 인증을 받은 제품
5. 기타 아래 요건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하여 회사의 내부 기준에 따라 친환경 제품으로 인정된 제품을 말한다.
 - 포장 감량 및 용기회수가 가능한 폐기물 저감물품 (예: IBC 용기, 두께절감 스틸 드럼)
 - 생산·유통 과정에서 에너지 및 자원 사용을 절감한 제품 (예: 경량 포장재)
 - 사용 시 오염물질 배출이 적은 제품 (예: 무독성 화합물, 수성 잉크 등)
 - 폐기 재활용 또는 자원회수가 용이한 순환경제 기여 제품 (예: 재생 드럼, 재생 스틸 드럼, 재생 팔라듐 촉매)

② ‘업체’는 해당 회사와 그 임직원을 포괄한다.

③ ‘구매의뢰부서’는 “구매업무규정” 제3조 제16호의 정의를 준용한다.

④ ‘구매부서’는 “구매업무규정”의 별표 1. 구매 위임 범위를 포함하여 실제 구매업무를 진행하는 부서이다.

제 4 조 (의무)

- ① ‘친환경제품 우선 구매’라 함은 제3조 제1항에서 정한 물품을 동일한 구매품목에 우선하여 구매하는 행위를 말한다.
- ② 구매부서는 구매하고자 하는 품목에 친환경제품이 있는 경우 회사의 경제적 가치 등을 재고하여 친환경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노력하여 환경에 미치는 부작용을 최소화하도록 한다. 단, 구매하고자 하는 친환경제품의 현저한 품질 저하 또는 긴급한 수요의 발생 등 불가피한 사유로 구매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 ③ 구매의뢰부서는 구매하고자 하는 품목이 친환경제품인지 여부에 대한 확인이 어려운 경우 구매부서에 지원을 요청한다.
- ④ 구매부서는 공급업체, 용역계약업체, 공사수급업체 등 회사와 거래하는 업체들이 친환경제품에 관심을 기울이도록 지원하여야 하며,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업체의 육성과 협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⑤ 각 사업장에서는 재활용, 재사용이 가능한 자원을 적극적으로 검토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5년 11월 17일부터 제정·시행한다.